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2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박수영・김상훈・이종욱

백종헌 • 박덕흠 • 우재준

김소희 · 고동진 · 김 건

서일준 • 이성권 • 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3 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u>500</u>	<u>1천억</u>
<u>억원</u>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u>위</u>
원 규모가 <u>300억원</u> 이상인 신	<u>500억원</u>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